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부 고

1994. 12. 8.

교육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12월 1일

○ 회부일자 : 1994년 12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 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 8)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청 관리국장 신재철)

가. 제안이유

학교신설, 학과개편, 학교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 폐지, 택지개발지구의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도·농복합형태의 시·군 통합으로 인한 교명 및 주소가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신설 학교 (청주시 충북공업고등학교외 3교)
-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변경학교(제천시 제원고등학교)
- 학교 이전으로 주소변경학교(청주시 교동국민학교)

- 소규모학교 통·폐합
 - 본교에서 분교장 개편학교 (제천시 대전국민학교외 9교)
 - 본교 폐지학교 (제천시 청풍고등학교외 3교)
 - 분교장 폐지학교 (충주시 성남국민학교 등신분교장외 27교)
-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 폐지 (제천시 청전국민학교)
-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 (충주시 연수국민학교)
- 도·농복합형태의 시·군 통합 (증원군, 제천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만)

교육법 제82조 및 등법 제85조와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설학교 4개교, 학과개편에 따른 교명변경학교 1개교, 학교이전으로 인한 주소변경 1개교, 소규모 학교 통·폐합 42개교,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폐지 1개교,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 부여학교 1개교,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로 인한 위치변경학교 81개교 등을 변경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 : " 없 음 "

5. 토론요지 : " 없 음 "

6. 심사결과 : " 원 안 가 결 "

7. 소수의견요지 : " 없 음 "

※ 첨부서류

- 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